

#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2016 . . .

문서번호	시설운영팀-2352	책임	팀장	본부장	단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6.12.20.	12/19 이재만	12/19 김국환	12/19 최구환	12/20 유석윤	12/20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 (3922)호						

추진근거	- DDP 대관규정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디자인정책과	DDP규정개정(안) 검토	규정 개정 상정 통지 (2016.12.16.)
사 업 비	-		

※ 문서내용을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시설운영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자인정책과 )	무 <input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대관심의 공정성 강화, 대관료 및 대관신청서 개선 등 대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1. 제안사유

- 대관 업무 효율화 제고
  - 대관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
  - 대관료 책정 기준 보완 및 대관신청서 개선 등

## 2. 주요골자

- 대관 신청자료 접수 방법 확대
  - 기존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외 재단에서 정한 방법 추가
    - 사 유 : 재단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향후 접수 방법 다양성 반영  
(제6조 제1항)
- 대관심의 대상 명시
  - 알림1관, 알림2관 대관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나눔관 등)에서의 대관신청건의 경우 심사 제외하고 자체승인으로 절차 간소화
    - 사 유 : 알림1, 2관을 제외한 대관시설에서 개최되는 분야의 경우 시설이 소규모 이므로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회의 등 간소한 행사 위주이므로 재단 심의절차(약 30일 소요)에 적용이 곤란한 대관자들의 신속한 심의 절차 요구 반영

○ 재단 내부사업 대관심사 제외 규정 명시

- 사 유 : 재단 내부사업의 경우 대관심사 제외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명문화

(제7조)

□ 대관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명시

- 정기대관 심의 : 총 7인 내외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수시대관 심의 : 총 5인 내외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긴급 수시대관 심의 : 총 3인 내외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사 유 : 대관 심의 공정성 강화, 행감 시정처리요구 사항 반영 제도 정비

- 2014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DDP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시대관심의회가 내부위원만으로 진행된 것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7조 제2항)

□ 재단의 수탁사업 또는 고유사업 대관료 기준 명시

- DDP 자체기획사업이 아닌 재단 수탁사업(서울시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또는 재단 고유사업을 위해 대관시 대관료 납부 원칙.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 유 : 내부사업 행사 건수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 부담

(제9조 제4항)

□ 대관료 납부 기일 단서 신설

- 계약금 기간 내 미 입금시 취소 ⇨ 특별한 사유 인정시 납입기일 조정

- 사 유 : 금액 부족이 아닌 내부 결제 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인정

(제11조 제1항)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특별한 사유 인정시 잔금 납입기일 조정
  - 사 유 : 공적인 내부 결재 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인정  
(제11조 제8항)

□ 대관자 대표시스템 선택권 부여

- DDP 대표시스템 사용의 강제성 완화
  - 사 유 : 대관자의 경우 별도 대표시스템 사용 비중 높음  
(제12조 제2항)

□ 대관신청 제한 조항 추가

- DDP 임대시설물의 판매상품과 중복될 경우 신청 제한할 수 있음
  - 사 유 : 전시(행사)공간 용도 목적 외 사용시 제한  
(제15조 제2항)

□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 운영 신설

- DDP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 운영
  - 사 유 : 전시디자인설치, 전기시설, 방염, 구조해석, 미화 등 일정한 요건 이상을 갖춘 업체 사용으로 전시장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 도모

지정 등록업체 업종	
1. 전시디자인설치	9. 방염
2. 가구비품	10. 급배수/AIR
3. 카펫/파이텍스	11. 지게차
4. 운수통관	12. 리깅
5. 경비구역	13. 구조해석
6. 광고싸인물	14. 미화
7. 전기시설	15. 기타 DDP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
8. 가스설비	

□ '17년도 대관료 책정 (<별 표2> 2017년도 DDP대 관료)

○ 장기대관 할인을 신설 (기본시설 및 야외공간 적용)

- 사 유 : 장기대관시 할인 적용으로 양질의 콘텐츠 적극적 대관 유치 기대 및 대관자 의견 적극 반영

△ 알림터·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

※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예시) 120일 '알림1관' 장기대관 등차율 적용시 산출표

(단위 : 원)

일수	적용 일수	할인 등차율	할인대관료 단가	정상대관료계	할인대관료 계	할인액
1~14	14일	1	19,445,000	272,230,000	272,230,000	0
15~29	15일	0.9	17,500,500	291,675,000	262,507,500	29,167,500
30~59	30일	0.8	15,556,000	583,350,000	466,680,000	116,670,000
60~89	30일	0.7	13,611,500	583,350,000	408,345,000	175,005,000
90~	31일	0.5	9,722,500	602,795,000	301,397,500	301,397,500
계	120일			2,333,400,000	1,711,160,000	622,240,000

○ 디자인나눔관 및 갤러리문 대관료 책정 보완

- 사 유 : ① 기업행사와 학·협회 행사로 구분되어 있는 대관료 책정표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성 있음

대 관 공 간		현 행			개 정 안			
		기업회의, (중략)	학·협회의의 (국제회의), (중략)	전 시	기업회의, (중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의의 (중략)	전 시	
명 칭	면 적 (m2)	(A)	(B)	(C)	(A)	(B)	(C)	
동대문 문화공원	이간수문 전시장	604 (183평)	3,092,000원	1,546,000원	951,000원	3,092,000원	1,546,000원	951,000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 이간수문전시장의 경우 현재 임대중(SBA 동대문쇼룸 운영)이므로 대관시설에서 삭제

② 대부분 행사가 별도 설치작업이 없는 간소한 세미나, 회의 등으로, 행사 대관료가 높아 활용율이 저조하여 대관료 인하를 통한 나눔관 대관 활성화

· '16년도 디자인나눔관 세미나, 회의 등 외부 대관 저조 (외부 20개 행사)

명 칭		면 적 (㎡)	대관료	
			현 행	개 정 안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6,850,000원 (6,500/㎡) + 공간조성비용 1백만원	<u>3,925,000원</u> (3,250원/㎡) + 공간조성비용 1백만원

※ 참 고 :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 2,300/㎡, 알림터 알림1, 2관 : 6,500/㎡

○ 부속시설 대관료 규정 명시

- 사 유 : 방침으로 운영되던 부속공간 대관료를 규정에 반영하여 대관료 기준 관리 강화

(단위 : 원 / 일)

부 속 시 설		면적(㎡)	대관료(원/일)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4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60,000
	비즈니스라운지_B1	86(26평) 330,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57,000 (디자인전시관 2,300/㎡의 70% 수준인 1,610/㎡으로 책정) ※할인 기준 : 대관단점 고려 반영 - 조명·음향 설치 부적합 : 15% - 하역장 동선 비효율 : 10% - 관람객 동선 비효율 등 : 5%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 야외공간 현실적 사용 감안 대관료 책정

- 사 유 : 대관자들의 실제 야외공간 대관행태를 고려하여 현실적 요금 책정

시 설	현 행	개정안	변경 주요 사유
어울림광장	1,000,000원 (3mX3m/1일)	1,000,000 (최대10,000,000) (3mX3m/1일)	- 사용공간의 확장시 대관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의 1일 제한 대관료 구비 - 3mX3m/1일 소규모 공간 사용계약 후 실제 행사시 어울림광장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폐단 감안 사용료 현실화
디자인둘레길	800,000원 (3mX3m/1일)	1,150/m <sup>2</sup>	① 디자인둘레길 공간의 경우 총3,358m <sup>2</sup> 면적으로 1일 기준 대관 사용의 경우 약 3억원의 비현실적 대관료가 발생되어 요금 현실화 필요 ② 배움터의 타 전시장(디자인 전시관 등)에 비해 대관 단점이 존재하여 디자인전시관 2,300/m <sup>2</sup> 의 50% 기준으로 책정 ※할인 기준 : 대관단점 고려 반영 - 조명·음향 설치 부적합 : 15% - 인테리어 어려움(비탈길) : 15% - 하역장 동선 비효율 : 10% - 공간산만, 입출입통제 어려움, 관람객 동선 비효율 등 : 10% ※대관단점 : 공간 산만(열린공간), 조명·음향 설치 부적합(관객 몰입도 저하), 인테리어 설치 어려움(비탈길), 하역장 직접 부재, 관람객 동선 비효율(오르막), 관람객 입출입 통제 어려움 등
디자인거리 (국기봉)	-	1,000,000 (최대10,000,000) (3mX3m/1일)	- 어울림광장과 동일한 대관 금액으로 책정하여 야외 공간 대관료 일관성 유지 (1층 도로에 위치하여 광고 노출효과 높음)



시 설	현 행	개정안	변경 주요 사유
팔거리	800,000원 (3mX3m/1일)	〈삭제〉	- 팔거리는 시민 및 대관자들의 주요 이동경로로써 대관장소로 부적합 ※ 부득이 팔거리 일부 대관이 필요할 경우 공원 대관료 적용

○ 대관료 할인 기준 보완

- 사 유

① 객관적 할인기준 제시 : 할인율의 임의적 판단 여지 삭제

- 협력유치 : 최대 50% ⇨ 50%, 특별할인 : 최대 50% ⇨ 50% 등

② ‘제작, 철수’ 기준 삭제 : 현재까지 할인 적용사례 없음

- 제작, 철수 난이도 적용 시 주관적인 판단과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 대관료 할인율 적용기준표

할인항목	세부 내용	할인율	
		현 행	개정안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삭제〉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별도협의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 참고 : 할인 항목 설명

- 공공성 : 정부,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학·협회(학·협회 중 공공성 추구) 등에서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
    - (예 : 창업지원 매칭데이, 서울창업기업박람회,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건축문화제, 장애인창작 아트페어, 국제연소학회, LUCI 서울연례총회, 명품봉제페스티벌, 공유서울국제박람회, 굿마켓페스티벌 등)
  - 협력유치 : 재단(DDP)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한 콘텐츠 파워 (정체성, 집객성, 연속성, 독창성, 홍보성 등 부합)를 지니고 있는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함
    - (예 : 서울디지털포럼, SIA, AAF, 스타일쉐어 등)
  - 특별할인 : 공실발생 우려시 할인
    - (예 : 개최 임박 행사가 취소될 시 긴급하게 유치가 필요할 경우, 알림1관 장기행사시 알림2관 대관 유치 어려움 등)
  - 공동주최 : 재단(DDP)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기획 또는 진행하기 위함
    - (예 : 아시아프, 핸드메이드,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사진전 등)
- (서식 1~3호) 대관신청서, 대관승인서, 대관계약서 내용 보완
- 주요사유
    - 공통) 과거 대관시설명을 현재 대관시설명으로 바로잡음
    - 대관계약서) 대관자 주의 사항을 계약서에 기입 안내하여 대관 시비 미연 예방

---

### 3. 참고사항

---

- 제안근거 : 현행 규정
- 절 차 : 서울시 승인 후 재단 내부방침으로 개정
- 협 의 : 서울시(디자인정책과)
- 기 타 :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첨 부 : 1. DDP 대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통지 1부.  
2. DDP대관규정개정안에대한시검토의견 1부. 끝.

## 【별지】

# 「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DDP대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6 조 제1항 중 ‘우편 또는 이메일’을 ‘우편, 이메일 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으로’로 한다.

○ 제 7 조 제1항 제2호를 제3항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1호 관련 심사함에 있어 알림1,2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소규모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회의, 공모전(시상식) 등의 대관신청 건은 자체심사를 하고, 재단 내부사업 행사의 경우는 심사하지 않는다.’

○ 제 7 조 제2항 중 ‘재단이 정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 제 7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기대관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7인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시대관 심의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5인내외로 구성한다.’

○ 제 7 조 제4항 중 ‘서면 심사를 통해’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내외의 위원 구성으로’로 한다.

○ 제 9 조 제5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DDP 자체기획사업이 아닌 재단의 수탁사업 또는 재단 고유사업 대관의 경우 관련부서는 대관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11조 제1항 중 “납부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관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입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면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1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료의 납입 지연 사유가 명시된 확인 공문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2조 제2항 중 ‘대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대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입장권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한 경우, 재단이 승인한 별도의 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를 “입장권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판매대행사와 계약시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 제 15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DDP 임대시설물의 판매상품과 중복될 때’

- ‘제 20조 내지 제26조’를 ‘제21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

① DDP는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구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영 외에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부문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1. 전시디자인설치

2. 가구비품

3. 카펫/파이텍스

4. 운수통관

5. 경비용역

6. 광고싸인물

7. 전기시설

8. 가스설비

9. 방염

10. 급배수/AIR

11. 지게차

12. 리깅

13. 구조해석

14. 미화

15. 기타 DDP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

③ 사용자는 전항 각 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 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체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시등록하여 DDP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가 DDP 대관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경고, 출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별표 1>을 삭제한다.
-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서식 제1호] 내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 2016년도 DDP 대관료는 2016.12.31.까지 적용하고 [별표2] 2017년 DDP 대관료는 2017.1.1.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관 협의시 재단의 승인에 따라 대관비용을 사전에 결정한 경우 승인된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별 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 (대관신청)</p> <p>① 제4조의 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 (이하 '대관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 (서식 제1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시(공연 등)계획서 및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는 별도로 <u>우편 또는 이메일로</u>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 (대관 심의위원회)</p> <p>① (생략)</p> <p>1. (생략)</p> <p>〈신설〉</p> <p>2. (생략)</p> <p>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재단이</u> 정한다.</p>	<p>제6조 (대관신청)</p> <p>① ----- ----- ----- ----- ---- <u>우편, 이메일 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으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대관 심의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u>2. 위 1호 관련 심사함에 있어 알림1,2 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소규모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회의, 공모전(시상식) 등의 대관신청 건은 자체심사를 하고, 재단 내부사업 행사의 경우는 심사하지 않는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 ----- ----- <u>다음 각 호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④ 긴급한 수시대관 요청의 경우 <u>서면 심사를 통해</u>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기대관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7인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시대관 심의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5인내외로 구성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내외의 위원 구성으로</u>-----.</p>
<p>제9조 (대관료) ①~③ (생략)</p> <p>④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신설〉</p>	<p>제9조 (대관료)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DDP 자체기획사업이 아닌 재단의 수탁 사업 또는 재단 고유사업 대관의 경우 관련부서는 대관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11조 (대관료 납부 등) 대관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p> <p>① 계약금은 재단이 정한 기간 내(승인서 기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p> <p>〈후단 신설〉</p>	<p>제11조 (대관료 납부 등) ----- -----.</p> <p>① 계약금은 재단이 정한 기간 내(승인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 <u>다만, 대관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입기일을</u></p>

현 행	개정안
<p>②~⑦ (생략)</p> <p>&lt;신설&gt;</p>	<p><u>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면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②~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료의 납입 지연 사유가 명시된 확인 공문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12조(입장권의 발행)</p> <p>① (생략)</p> <p>② <u>대관자는 입장권 예매, 현장판매 등 입장권 발행시 DDP의 <u>매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u> 단, 입장권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한 경우, 재단이 승인한 별도의 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제12조(입장권의 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매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u> ----- ----- <u>위해 별도의 판매대행사와 계약시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 (대관신청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정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4. (생략)</p> <p>&lt;신설&gt;</p>	<p>제15조 (대관신청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정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4. (현행과 같음)</p> <p><u>5. DDP 임대시설물의 판매상품과 중복될 때</u></p>

현 행	개정안
5. (생략)	6. (현행과 같음)
<p>〈신설〉</p>	<p><u>제20조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u></p> <p>① <u>DDP는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직영으로 할 수 있다.</u></p> <p>② <u>직영 외에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부문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전시디자인설치</u></li> <li><u>2. 가구비품</u></li> <li><u>3. 카펫/파이텍스</u></li> <li><u>4. 운수통관</u></li> <li><u>5. 경비용역</u></li> <li><u>6. 광고싸인물</u></li> <li><u>7. 전기시설</u></li> <li><u>8. 가스설비</u></li> <li><u>9. 방염</u></li> <li><u>10. 급배수/AIR</u></li> <li><u>11. 지게차</u></li> <li><u>12. 리깅</u></li> <li><u>13. 구조해석</u></li> <li><u>14. 미화</u></li> <li><u>15. 기타 DDP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u></li> </ol> <p>② <u>사용자는 전항 각 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체사용이 불가피</u></p>

현 행	개정안
	<p><u>할 경우 사전에 수시등록하여 DDP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u></p> <p><u>③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가 DDP 대관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경고, 출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u></p>
<u>제20조~제26조 (생략)</u>	<u>제21조~제27조 (현행과 같음)</u>

[별표2를 별표1로 함]

**〈별표1〉 2016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일단위)

① 알림터, 배움터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②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m <sup>2</sup> )	기업행사 및 광고 (A)	학협회 행사 또는 공익광고 (B)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6,850,000원	3,925,000원

③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학·협회회의 (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 <sup>2</sup> )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604 (183평)	3,092,000원	1,546,000원	951,000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일)

목 적		장 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3×3m /1일
		팔거리, 둘레길	800,000	3×3m /1일
		기타(공원)	500,000	3×3m /1일
광고촬영(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 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000,000	3시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3.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신 설]

**〈별표2〉 2017년도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
	준비실		238 (72평)	1,54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

1) 알림터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을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을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을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나.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3,925,000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 <sup>2</sup> )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	873,000	537,000

라. 부속시설

(단위 : 원/일)

부속 시설		면적(m <sup>2</sup> )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4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60,000
	비즈니스라운지_B1	86(26평)	330,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일)

목 적	장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디자인둘레길	요금×사용면적	1,150/m <sup>2</sup>	
	디자인거리(국기봉)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기타(공원 등)	500,000	3×3m	
광고촬영(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 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등)	3,000,000	3시간	



1) 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을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을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프로모션 및 부스 (A)' 중 '디자인둘레길' 제외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50%
④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4.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참고 자료]

## DDP대관료 '16·'17년도 대비표

2016년도 DDP 대관료	2017년도 DDP 대관료																																																																								
<p>&lt;별표1&gt; 2016년 DDP 대관료</p> <p>1. 기본시설 대관료 (일단위)</p> <p style="margin-left: 20px;">① 알림터, 배움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대 관 공 간</th> <th>용도</th> <th>면 적 (m<sup>2</sup>)</th> <th>대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알림터</td> <td>알림1관</td> <td>2,992 (906평)</td> <td>19,445,000원</td> </tr> <tr> <td>알림2관</td> <td>1,547 (468평)</td> <td>10,059,000원</td> </tr> <tr> <td>국제회의장</td> <td>414 (125평)</td> <td>2,693,000원</td> </tr> <tr> <td>준비실</td> <td>238 (72평)</td> <td>1,547,000원</td> </tr> <tr> <td>배움터</td> <td>디자인전시관</td> <td>전시전용관</td> <td>1,216 (368평)</td> <td>2,797,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대관료 할인을 적용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항 목</th> <th>세부 내용</th> <th>할인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td> <td>•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② 협력유치</td> <td>•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50%</td> </tr> <tr> <td>③ 특별할인</td> <td>•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50%</td> </tr> <tr> <td>④ 제작, 철수</td> <td>•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30%</td> </tr> <tr> <td>⑤ 공동주최</td> <td>•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별도협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lt;신 설&gt;</p>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p>&lt;별표2&gt; 2017년 DDP 대관료</p> <p>1. 기본시설 대관료</p> <p style="margin-left: 20px;">가. 알림터, 배움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대 관 공 간</th> <th>용도</th> <th>면 적 (m<sup>2</sup>)</th> <th>대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알림터</td> <td>알림1관</td> <td>2,992 (906평)</td> <td>19,445,000원</td> </tr> <tr> <td>알림2관</td> <td>1,547 (468평)</td> <td>10,059,000원</td> </tr> <tr> <td>국제회의장</td> <td>414 (125평)</td> <td>2,693,000원</td> </tr> <tr> <td>준비실</td> <td>238 (72평)</td> <td>1,547,000원</td> </tr> <tr> <td>배움터</td> <td>디자인전시관</td> <td>전시전용관</td> <td>1,216 (368평)</td> <td>2,797,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lt;3항으로 이동&gt;</p> <p style="margin-top: 20px;">1) 알림터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율 적용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 분</th> <th>15일 이상</th> <th>30일 이상</th> <th>60일 이상</th> <th>90일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할인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율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율 적용 하지 않음</li> <li>-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 하지 않음</li> <li>-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li> </ul>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2016년도 DDP 대관료

### ②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 (m <sup>2</sup> )	기업행사 및 광고	학협회 행사 또는 공익광고
		(A)	(B)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6,850,000원	3,925,000원

### ③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학협회의(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 <sup>2</sup> )	(A)	(B)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간수문 전시장	604 (183평)	3,092,000원	1,546,000원	951,000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 <신 설>

## 2017년도 DDP 대관료

### 나.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u>3,925,000</u>

###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의(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 <sup>2</sup> )	(A)	(B)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간수문 전시장	<del>604 (183평)</del>	<del>3,092,000원</del>	<del>1,546,000원</del>	<del>951,000원</del>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 라. 부속시설

(단위 : 원/일)

부속 시설		면적(m <sup>2</sup> )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4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60,000
비즈니스라운지_B1	86(26평)	330,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757,000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로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 2016년도 DDP 대관료

###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

목 적	장 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3×3m /1일	
	팔거리, 둘레길	800,000	3×3m /1일	
	기타(공원)	500,000	3×3m /1일	
광고 촬영 (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000,000	3시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 <신 설>

## 2017년도 DDP 대관료

###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일)

목 적	장 소	대관료(원/일)	기 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팔거리 디자인둘레길	요일×사용면적	1,150/m'	
	디자인거리(국기봉)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기타(공원 등)	500,000	3×3m	
	광고 촬영 (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000,000	3시간	

### <삭 제>

#### 1) 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을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을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을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을 기준 적용 하지 않음
- '프로모션 및 부스 (A)' 중 '디자인둘레길' 제외

## 2016년도 DDP 대관료

### ■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약의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3.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 2017년도 DDP 대관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del>할인율</del> 적용	최대 30%
④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약의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4.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식 제2호 대관승인서〉

현행	개정안																				
[서식 제2호] DDP 대관 승인서	[서식 제2호] DDP 대관 승인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인</td> <td>이름(단체명)</td> <td>대표자</td> <td></td> </tr> <tr> <td>주소</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 colspan="3">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td> </tr> </table>	신청인	이름(단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table border="1">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인</td> <td>이름(단체명)</td> <td>대표자</td> <td></td> </tr> <tr> <td>사업장 주소</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 colspan="3">사업자등록번호</td> </tr> </table>	신청인	이름(단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이름(단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이름(단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p>□ 계약 개요</p> <table border="1"> <tr> <td>1. 전시(행사)명</td> <td></td> </tr> <tr> <td>2. 대관시설</td> <td>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                 </td> </tr> <tr> <td>3. 대관기간</td> <td>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                      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                 </td> </tr> <tr> <td>4. 사용목적</td> <td></td> </tr> </table>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 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	4. 사용목적		<p>□ 계약 개요</p> <table border="1"> <tr> <td>1. 전시(행사)명</td> <td></td> </tr> <tr> <td>2. 대관시설</td> <td></td> </tr> <tr> <td>3. 대관기간</td> <td>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td> </tr> <tr> <td>4. 행사분야</td> <td></td> </tr> <tr> <td>5. 기타사항</td> <td></td> </tr> </table>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 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																				
4. 사용목적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p>□ 대관료</p> <table border="1"> <tr> <td>1. 총금액</td> <td>₩</td> </tr> <tr> <td></td> <td>- 대관료 : ₩</td> </tr> <tr> <td></td> <td>- 할인액 : ₩</td> </tr> <tr> <td>2. 대관료 납부</td> <td>                     1) 계약금 : ₩                      2) 중도금 : ₩                      3) 잔금 : ₩                      소 계 : ₩                 </td> </tr> </table>	1. 총금액	₩		- 대관료 : ₩		- 할인액 : ₩	2. 대관료 납부	1) 계약금 : ₩ 2) 중도금 : ₩ 3) 잔금 : ₩ 소 계 : ₩	<p>□ 대관료</p> <table border="1"> <tr> <td>총금액</td> <td>₩</td> </tr> <tr> <td>금액 및 납부기한</td> <td>                     계약금 : ₩ 20년 월 일까지                      잔금 : ₩ 20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td> </tr> <tr> <td>원상복구예치금</td> <td>                     예치금 : ₩ 20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td> </tr> </table> <p>*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로, 전시(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사항이 없을시 반환됩니다.</p>	총금액	₩	금액 및 납부기한	계약금 : ₩ 20년 월 일까지 잔금 : ₩ 20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예치금 : ₩ 20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1. 총금액	₩																				
	- 대관료 : ₩																				
	- 할인액 : ₩																				
2. 대관료 납부	1) 계약금 : ₩ 2) 중도금 : ₩ 3) 잔금 : ₩ 소 계 : ₩																				
총금액	₩																				
금액 및 납부기한	계약금 : ₩ 20년 월 일까지 잔금 : ₩ 20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예치금 : ₩ 20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p>&lt; 사용 준수사항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 승인 통보를 받은 대관신청자는 승인후 15일내 까지 계약금 납부 및 'DDP임대차 계약서'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합니다.</li> <li>계약 체결일이 행사 2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중도금없이 계약금으로 50%를 납부합니다.</li> <li>사용자가 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로 인정합니다.</li> </ol> <p>※ 대관료 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 계좌명 : (재)서울디자인재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체결시에 계약금 납부영수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li> </ol>	<p>&lt; 대관자 준수사항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금을 지정하는 상기 계좌에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나 정해진 대관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사용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li> <li>본 승인서는 행사 개최 승인이며, 대관 기간, 장소, 대관료는 세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체결을 통해 최종 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li> <li>그 밖의 문의는 담당자(T: 0000-0000)에게 문의 바랍니다.</li> </ol>																				
<p>귀하께서 신청하신 DDP 대관시설 사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p>	<p>귀하께서 신청하신 DDP 대관시설 사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p>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식 제3호 대관계약서〉

현 행	개정안																																																																																																																																													
<p>[서식 제3호]</p> <p style="text-align: center;"><b>DDP 대관 계약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입 대 인</td> <td style="width: 15%;">단체명</td> <td style="width: 35%;">서울디자인재단</td> <td style="width: 15%;">대표자</td> <td style="width: 30%;">백종원</td> </tr> <tr> <td></td> <td>주 소</td> <td colspan="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5%;">대 관 자</td> <td style="width: 25%;">이름(또는 단체명)</td> <td style="width: 15%;">대표자</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td> <td>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r> </table> <p>상기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p> <p><b>□ 계약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 전시 (행사)명</td> <td></td> </tr> <tr> <td rowspan="2">2. 대관시설</td> <td><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td> </tr> <tr> <td rowspan="4">3. 대관기간</td> <td>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td> </tr> <tr> <td>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4. 사용목적</td> <td></td> </tr> </table> <p><b>□ 대관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 총금액</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금</td> <td style="width: 15%;">원정) VAT포함</td> <td style="width: 45%;"></td> </tr> <tr> <td></td> <td>- 대관료 :</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 할인액 :</td> <td colspan="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2. 대관료 납부</td> <td style="width: 10%;">1) 계약금 : ₩</td> <td style="width: 15%;">(20년</td> <td style="width: 15%;">월</td> <td style="width: 45%;">일까지)</td> </tr> <tr> <td></td> <td>2) 중도금 : ₩</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3) 잔금 : ₩</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소 계 : ₩</td> <td colspan="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 사용 준수사항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 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계좌명 : (재)서울디자인재단</li> <li>시설 사용시 사고 혹은 과실로 인한 비품 등 시설물의 손상과 화재, 도난 등 모든 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li> <li>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비품 등을 이동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후 정리정돈 완료 확인 후 사용을 종료하여야 합니다.</li> <li>기타사항은 대관규정을 따릅니다.</li> </ol>	입 대 인	단체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	백종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대 관 자	이름(또는 단체명)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 전시 (행사)명		2. 대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	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	4. 사용목적		1. 총금액	₩	(금	원정) VAT포함			- 대관료 :					- 할인액 :				2. 대관료 납부	1) 계약금 : ₩	(20년	월	일까지)		2) 중도금 : ₩					3) 잔금 : ₩					소 계 : ₩				<p>[서식 제3호]</p> <p style="text-align: center;"><b>DDP 대관 계약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입 대 인</td> <td style="width: 15%;">단체명</td> <td style="width: 35%;">서울디자인재단</td> <td style="width: 15%;">대표자</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td>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5%;">대 관 자</td> <td style="width: 25%;">이름(또는 단체명)</td> <td style="width: 15%;">대표자</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td> <td>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r> </table> <p>상기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p> <p><b>제1조 (계약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 전시 (행사)명</td> <td></td> </tr> <tr> <td rowspan="2">2. 대관시설</td> <td></td> </tr> <tr> <td></td> </tr> <tr> <td rowspan="4">3. 대관기간</td> <td>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td> </tr> <tr> <td>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td> </tr> <tr> <td>4. 행사분야</td> <td></td> </tr> <tr> <td>5. 기타사항</td> <td></td> </tr> </table> <p><b>제2조 (대관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총액</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금</td> <td style="width: 15%;">원) VAT 포함</td> <td style="width: 45%;"></td> </tr> <tr> <td>1) 계약금</td> <td>₩</td> <td colspan="3">(20년 월 일까지)</td> </tr> <tr> <td>2) 잔금</td> <td>₩</td> <td colspan="3">(20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5">대관료납부계좌 :</td> </tr> <tr> <td colspan="5">원상복구예치금 ₩ (20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5">예치금납부계좌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 사용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행사 전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단, 계산이 용이하지 않는 비용은 사후 정산한다.</li> <li>원상복구비용은 행사종료 이후 한 달(30일) 이내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시설의 하자보수 발생시 DDP에서 요청 시 즉시 원상복구에 응해야 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소요비용을 제한 잔액 정산 및 처리는 3개월(90일) 이내로 한다.</li> </ol> <p><b>제3조 (계약 준수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까지 대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li> <li>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DDP 대관 규약을 따른다. DDP 대관 규약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li> </ol> <p><b>제4조 (대관자의 의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의 직원 이외의</li> </ol>	입 대 인	단체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			주 소				대 관 자	이름(또는 단체명)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 전시 (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총액	₩	(금	원) VAT 포함		1) 계약금	₩	(20년 월 일까지)			2) 잔금	₩	(20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 (20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입 대 인	단체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	백종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대 관 자	이름(또는 단체명)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 전시 (행사)명																																																																																																																																														
2. 대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1(1,548㎡) <input type="checkbox"/> 오픈스튜디오2 (2,992㎡)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기획전시관 <input type="checkbox"/>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DDP야외 (평화광장, 잔디광장/무대) <input type="checkbox"/> 이벤트홀(1F, B1)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갤러리 <input type="checkbox"/> 야외공연장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전시준비 : 월 일 ~ 월 일 (일간)																																																																																																																																													
	전시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작품철수 : 월 일 ~ 월 일 (일간)																																																																																																																																													
4. 사용목적																																																																																																																																														
1. 총금액	₩	(금	원정) VAT포함																																																																																																																																											
	- 대관료 :																																																																																																																																													
	- 할인액 :																																																																																																																																													
2. 대관료 납부	1) 계약금 : ₩	(20년	월	일까지)																																																																																																																																										
	2) 중도금 : ₩																																																																																																																																													
	3) 잔금 : ₩																																																																																																																																													
	소 계 : ₩																																																																																																																																													
입 대 인	단체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																																																																																																																																											
	주 소																																																																																																																																													
대 관 자	이름(또는 단체명)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 전시 (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총액	₩	(금	원) VAT 포함																																																																																																																																											
1) 계약금	₩	(20년 월 일까지)																																																																																																																																												
2) 잔금	₩	(20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 (20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현 행	개정안
<p>20 년 월 일</p> <p>임대인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p> <p><u>임차인</u></p>	<p>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p> <p>2) '대관자'는 '임대인'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된다.</p> <p>3) '대관자'는 대관이 종료되거나 해약 및 정지된 후에는 시설물의 해체, 원상회복은 물론 부작물이나 쓰레기 등은 행사 종료직후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4)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5) '임대인'은 대관기간(행사준비, 행사진행, 철거)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단, '임대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p> <p>6) '임대인'은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정, 해체 및 복구 등에 복수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대관자'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타 업체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시등록하여 DDP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p> <p>7) '임대인'은 '대관자'가 대관규약 16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8) '대관자'는 '임대인'에게 대관 기간 중에 행사(전시) 사진 및 관람객 숫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 <p><u>제5조 (대관자의 행위제한) '대관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u></p> <p>1) 대관승인 내용(행사명,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변경 행위</p> <p>2) 대관시설 변경행위</p> <p>3) 행사내용(대관목적) 변경행위</p> <p>4) 행사장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p> <p><u>제6조 (해약 및 정지명령)</u></p> <p>'대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대관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p> <p>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p> <p>3) 전시장 또는 행사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p> <p>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p> <p><u>제7조 (환불)</u></p> <p>1) 천재지변의 경우, 기타 불가항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반환</p> <p>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p> <p>3) 사용예정일 12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임대인'이 인정할 때(50%)반환</p> <p>4) 사용예정일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임대인'이 인정할 때(30%)반환</p> <p>5) 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89일 이내 (납부액 반환 없음)</p> <p><u>제8조 (증거) 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임대인', '대관자'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임대인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p> <p>대관자 :</p>

# DDP 대관 규정 개정 전문

제정 2013. 10. 24

개정 2015. 06. 03

개정 2016. 12. XX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이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

### 제2조(적용범위)

대관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대관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행사,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자가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
- ② 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 절차를 거쳐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 관리자라 함은 재단의 임직원 및 DDP 시설관리 위탁용역 업체 직원을 말한다.
- ④ 대관기간은 행사 및 전시 준비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

### 제4조 (대관의 범위)

DDP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알림터(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장 및 기타 부속시설), 배움터(디자인전시관 및 기타 부속시설), 살림터(디자인나눔관 및 기타 부속시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15.6.3.>
2. 부대시설 : 위 기본시설에 부가된 공간, 장치·장비, 매체 등 <개정 2015.6.3.>
3. 야외 공간 : DDP 어울림광장, 팔거리, 잔디언덕 등 <개정 2015.6.3.>

### 제5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
- ②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및 5년 이내의 행사 및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재단 자체 심의를 거쳐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5.6.3.>
- ④ <삭제 2015.6.3.>

## 제2장 대관절차

### 제6조 (대관 신청)

- ① 제4조의 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시(공연 등)계획서 및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는 별도로 **우편, 이메일 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 <개정 2016.12.XX.>
- ② 대관신청시 대관기간은 행사 및 전시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5.6.3.>

### 제7조 (대관 심의위원회)

- ① 재단은 제4조 제1호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6.3.>
  - 1. 위원회는 정기대관신청 및 수시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5.6.3.>
  - 2. 위 1호 관련 심사함에 있어 **알림1,2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소규모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회의, 공모전(시상식) 등의 대관신청 건은 자체심사를 하고, 재단 내부사업 행사의 경우는 심사하지 않는다.** <신규 2016.12.XX.>
  - 3. 재단은 위원회의 대관심사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기록·유지·보관한다.
-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XX.>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정기대관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7인내 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시대관 심의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5인내외로 구성한다. <신규 2016.12.XX.>
- ③ 대관승인기준은 재단이 운영실태 및 차기연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 ④ 긴급한 수시대관 요청의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내외의 위원 구성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규 2015.6.3.>, <개정 2016.12.XX.>

### 제8조 (대관승인)

-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대관승인(서식 제2호)의 거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계약(서식 제3호)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대관료

### 제9조 (대관료)

- ①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 ②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 ③ 장치 장비 등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 케이터링 등에 대한 사용료는 재단이 정한다.
- ④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전시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2. 공익(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재단과 협의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3.>
  - 3. 재단에서 협력유치를 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6.3.>
  - 4. 공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 5. DDP 자체기획사업이 아닌 재단의 수탁사업 또는 재단 고유사업을 위해 내부 대관시 관련부서는 대관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규 2016.12.XX.>

### 제10조 (대관료 구성 및 사용시간 등)

- 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나뉘며, DDP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10:00~21:00(1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재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1.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관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냉·난방비와 기본 조명료 등으로 한다.
  -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공간, 장치·장비, 매체 등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6.3.>

### 제11조 (대관료 납부 등)

대관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 ① 계약금은 재단이 정한 기간 내(승인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하며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 다만, 대관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입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면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6.3.>, <개정 2016.12.XX.>
- ② 계약금(정기대관, 수시대관)은 대관료 총액의 50%로 한다.<개정 2015.6.3.>
- ③ 잔금은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잔금납부 시까지 전시 개막을 유보하거나 전시작품 일부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재단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3.>
- ④ 전시기간 중 추가로 공간 및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재단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완납이 안 되었을 시에는 행사 및 전시 작품 일부에 대하여 재단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3.>
- ⑤ 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관자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료 총액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신규 2015.6.3.>
- ⑥ 일금 천만원(W10,000,000원) 이하의 대관료 및 행사 1개월 전 대관의 경우는 계약 시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완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관료 총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시 제출한다.<신규 2015.6.3.>
- ⑦ 재단은 대관기간 중 사용하는 공간, 장치·장비, 매체의 원상복구비용 발생에 대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규 2015.6.3.>
- ⑧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료의 납입 지연 사유가 명시된 확인 공문을 확보한 후에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규 2016.12.XX.>

## 제4장 입장권 및 홍보

### 제12조(입장권의 발행)

- ① DDP의 모든 행사 및 전시의 입장권은 전산으로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
- ② 대관자는 입장권 예매, 현장판매 등 입장권 발행시 DDP의 매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권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판매대행사와 계약시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XX.>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DDP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해

야한다.

- ④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할 경우, 본인과 직계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서울시 및 재단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DDP 내외부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체규정(CI, 사인물 등 관리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 제14조(방송 및 부대행사 등)

- ① 재단에서 행해지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재단에 승인 받아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대관 신청 제한 및 대관 취소

### 제15조 (대관신청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정지)

- ①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DDP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DDP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개정 2015.6.3.>
  - 4. 기타 DDP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6. 기타 DDP의 대관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예)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 결혼식 등)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
  - 1. 대관 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전시장 또는 행사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DDP 임대시설물의 판매상품과 중복될 때 <신규 2016.12.XX.>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16조 (대관취소 및 대관료 반환)

- ①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3.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12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4.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30% 반환)
  5. 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8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납부액 반환 없음)

## 제6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 제17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 (대관 내용 등 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재단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재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단은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일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재단이 별도로 인정하여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재단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9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재단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제7장 관리의무사항

### 제20조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

- ① DDP는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 ② 직영 외에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부문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1. 전시디자인설치
  2. 가구비품
  3. 카펫/파이텍스
  4. 운수통관
  5. 경비구역
  6. 광고싸인물
  7. 전기시설
  8. 가스설비
  9. 방염
  10. 급배수/AIR
  11. 지게차
  12. 리깅
  13. 구조해석
  14. 미화
  15. 기타 DDP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
- ③ 사용자는 전항 각 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시등록하여 DDP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가 DDP 대관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경고, 출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규 2016.12.XX.>



### 제21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 ① 재단은 DDP의 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통제, 완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DDP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가연물 및 발화물질 등에 대하여서는 행사 및 전시관련 기본시설의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한다.<개정 2015.6.3.>
  2.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재단이 정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 (대관자의 의무)

-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DDP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재단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5.6.3.>

### 제23조 (대관자의 설비)

-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물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재단에서 정한 규약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5.6.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징수한다. 재단이 철거할 시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5.6.3.>

### 제24조 (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3.>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DDP(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25조 (배상책임)

- ① 재단은 제15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5.6.3.>
- ②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단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 제26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DDP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DDP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6.3.>

#### 제27조 (시행규약)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6.3.>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 2016년도 DDP 대관료는 2016.12.31.까지 적용하고 [별표2] 2017년 DDP 대관료는 2017.1.1.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관 협의시 재단의 승인에 따라 대관비용을 사전에 결정한 경우 승인된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6.3.>, <개정 2016.12.XX>

## <별표1> 2016년 DDP 대관료 <신설 2015.6.3>

### 1. 기본시설 대관료 (일단위)

#### ① 알림터, 배움터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원
	준비실		238 (72평)	1,547,000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 ■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최대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최대 50%
④ 제작, 철수	• 제작설치 및 철거의 난이도와 지원상황에 따라 제작설치 및 철거일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	최대 30%
⑤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약 (수익분담 조건에 따름)

#### ②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 (m <sup>2</sup> )	기업행사 및 광고	학협회 행사 또는 공익광고
			(A)	(B)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6,850,000원	3,925,000원

#### ③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면 적 (m <sup>2</sup> )	기업회의(국제회의),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학협회의(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A)	(B)	(C)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604 (183평)	3,092,000원	1,546,000원	951,000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일)

목 적		장소	대관료(원/일)	기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3×3m /1일
		팔거리, 둘레길	800,000	3×3m /1일
		기타(공원)	500,000	3×3m /1일
광고촬영(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 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000,000	3시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 3.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 <별표2> 2017년도 DDP 대관료 <신설 2016.12.XX>

### 1. 기본시설 대관료

#### 가. 알림터, 배움터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용도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알림터	알림1관	행사전용관 (용도제한 없음)	2,992 (906평)	19,445,000원
	알림2관		1,547 (468평)	10,059,000원
	국제회의장		414 (125평)	2,693,000
	준비실		238 (72평)	1,547,0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전용관	1,216 (368평)	2,797,000원

#### 1) 알림터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을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을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을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을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

#### 나. 살림터

(단위 : 원/일)

명 칭		면 적 (m <sup>2</sup> )	대관료
살림터	디자인나눔관	900 (272평)	3,925,000

#### 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단위 : 원/일)

대 관 공 간		기업회의(국제회의) , 기업행사, 런칭쇼, 패션쇼, 시상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협회회의(국제회의), 공연, 아트페어, 박람회	전 시
명 칭	면 적 (m <sup>2</sup> )	(A)	(B)	(C)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갤러리문	341 (103평)	1,746,000원	873,000원 537,000원

라. 부속시설

(단위 : 원/일)

부속 시설		면적(m <sup>2</sup> )	대관비용(원)
알림터	알림1관		
	VIP대기실_1F	102(31평)	440,000
	대기실1_B1	45(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2_B1	46(14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3_B1	16(5평)	알림1관 대관 기본 제공
	알림2관		
	대기실2_B1	50(15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운영지원사무실1_B1	67(21평)	알림2관 대관 기본 제공
	공 통		
	고객지원실_B2	289(87평)	660,000
	비즈니스라운지_B1	86(26평)	330,000
	배움터	둘레길쉼터	470(142평)

- 부속공간은 단독대관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대관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음

2. DDP 야외공간 대관료

(단위 : 원/일)

목적		장소	대관료(원/일)	기준
프로모션 및 부스 (A)		어울림광장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디자인둘레길	요율×사용면적	1,150/m <sup>2</sup>
		디자인거리(국기봉)	1,000,000 (최대 10,000,000)	3×3m/1일
		기타(공원 등)	500,000	3×3m
광고촬영(B)	사진촬영 (화보, 홍보사진)	어울림광장	1,5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1,000,000	3시간
		기타(공원)	500,000	3시간
	동영상촬영 (TV, 인터넷)	어울림광장	4,000,000	3시간
		팔거리, 둘레길	3,000,000	3시간
		기타(공원)	2,000,000	3시간
드라마, 영화, 기타방송촬영(C)		어울림광장, 팔거리, 둘레길 기타(공원)	3,000,000	3시간

1) 야외공간 대관료 장기대관 할인을 적용 기준

구 분	15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할인율	10%	20%	30%	50%

- 대관시설별 대관 기간 일수 도달 시마다 할인을 적용하며, 전체 기간 일괄 산정 후 할인을 적용 하지 않음
-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할인율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프로모션 및 부스 (A)' 중 '디자인둘레길' 제외

3. 대관료 할인율 적용 기준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① 공공성 (※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 주최, 주관이 학·협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	50%
② 협력유치	• 재단(DDP)에서 협력유치 하는 경우 대관료를 할인	50%
③ 특별할인	• 공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특별 할인율을 적용	50%
④ 공동주최	• 재단(DDP)과 공동으로 주최 경우 성격에 따라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별도협의를 (수익분담 등 별도 조건에 따름)

-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책정

4.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DDP 대관규약에 따름

# DDP 대관 신청서 <개정 2016.12.XX>

<b>신 청 자</b>	이름 (또는 단체명)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홈페이지		
		휴대폰		이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b>신 청 내 용</b>	행사명	국문				
		영문				
	주최·주관	주최기관				
		주관기관				
	대관시설	알림터	<input type="checkbox"/> 알림1관 (2,992㎡) <input type="checkbox"/> 알림2관 (1,547㎡)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장[단독사용 불가 원칙] (414㎡) ※ 알림터 부속공간은 계약진행 시 별도 협의			
		배움터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시관 (1216㎡)			
		살림터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나눔관 (900㎡)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input type="checkbox"/> 갤러리문 (341㎡)			
		야외공간	<input type="checkbox"/> 어울림광장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거리[국기봉]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둘레길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야외공간은 대관 신청 후 별도 협의			
	대관기간	<b>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b> -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일간)				
행사 분야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기업)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학·협회)	<input type="checkbox"/> 기업행사	<input type="checkbox"/> 지자체행사		
	<input type="checkbox"/> 런칭쇼	<input type="checkbox"/> 패션쇼	<input type="checkbox"/> 시상식	<input type="checkbox"/> 공연·이벤트		
	<input type="checkbox"/> 아트페어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행사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행사 유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료		<input type="checkbox"/> 무료			
행사내용 (요약 : 100자내)						
<b>첨 부</b>	1) 전시 또는 행사 계획서 1부 2) 주최 및 주관기관에 관한 소개자료(회사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DDP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 DDP 대관 승인서 <개정 2016.12.XX>

신청인	이름(단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개요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행사기간 :	월	일	~	월
월	일	(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월	일	(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대관료

총 금액	₩				
금액 및 납부기한	계약금 :	₩	20 년	월	일까지
	잔 금 :	₩	20 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예치금 :	₩	20 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 원상복구예치금은 대관료와 별도로이며, 전시(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사항이 없으시 반환됩니다.

<b>&lt; 대관자 준수사항 &gt;</b>					
1.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금을 지정하는 상기 계좌에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나 정해진 대관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사용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본 승인서는 행사 개최 승인이며, 대관 기간, 장소, 대관료는 세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체결을 통해 최종 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문의는 담당자(T: 0000-0000)에게 문의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DDP 대관시설 사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DDP 대관 계약서 <개정 2016.12.XX>

입 대 인	단체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	
	주 소			

대 관 자	이름 (또는 단체명)	대표자	대표전화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개요)

1. 전시(행사)명	
2. 대관시설	
3. 대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설치기간 :            월      일 ~            월      일 ( 일간)
	행사기간 :            월      일 ~            월      일 ( 일간)
	철수기간 :            월      일 ~            월      일 ( 일간)
4. 행사분야	
5. 기타사항	

## 제2조 (대관료)

총 액	₩	(금            원) VAT 포함
1) 계약금	₩	20 년    월    일까지
2) 잔 금	₩	20 년    월    일까지
대관료납부계좌 :		

원상복구예치금	₩	20 년    월    일까지
예치금납부계좌 :		

- 1) 추가 사용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행사 전날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단, 계산이 용이하지 않는 비용은 사후 정산한다.
- 2) 원상복구비용은 행사종료 이후 한 달(30일) 이내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시설의 하자보수 발생시 DDP에서 요청 시 즉시 원상복구에 응해야 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소요비용을 제한 잔액 정산 및 처리는 3개월(9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 (계약 준수사항)

- 1) 대관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까지 대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DDP 대관 규약을 따른다. DDP 대관 규약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4조 (대관자의 의무)

- 1) '대관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의 직원 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 2) '대관자'는 '임대인'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된다.
- 3) '대관자'는 대관이 종료되거나 해약 및 정지된 후에는 시설물의 해체, 원상회복은 물론 부착물이나 쓰레기 등은 행사 종료직후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5) '임대인'은 대관기간(행사준비, 행사진행, 철거)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단, '임대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6) '임대인'은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에 복수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대관자'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타 업체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시등록하여 DDP의 서비스 지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 7) '임대인'은 '대관자'가 대관규약 16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대관자'는 '임대인'에게 대관 기간 중에 행사(전시) 사진 및 관람객 숫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5조 (대관자의 행위제한) '대관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대관승인 내용(행사명, 행사내용, 행사일정 등) 변경 행위
- 2) 대관시설 변경행위
- 3) 행사내용(대관목적) 변경행위
- 4) 행사장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

### 제6조 (해약 및 정지명령) '대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대관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 3) 전시장 또는 행사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 (환불)**

- 1) 천재지변의 경우, 기타 불가항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반환
-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 3) 사용예정일 12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임대인'이 인정할 때(50%)반환
- 4) 사용예정일 9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임대인'이 인정할 때(30%)반환
- 5) 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89일 이내 (납부액 반환 없음)

**제8조 (증거)**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임대인', '대관자'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

대관자 :